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이 조정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직무를 전담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검찰, 사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처리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관서로부터 압수물 수리·송부한 경우 압수물의 처리 절차(안 제5조, 제24조, 제58조의2 신설)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 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경우 통지근거 마련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

- 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 처분명령의 근거를 마련
- 나. 압수물에 관한 처분 촉탁 절차 정비 등(안 제76조)
-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의 처분 결과 회답 요청에 대한 촉탁회답서
서식을 마련함.
- 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에 따른 압수물 절차 정비 등(안 제2조, 제12조,
제28조, 제81조, 제82조 등)
- 1)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상소심법원에 대한 압수
물 수리 및 처분 등을 하도록 함
 - 2) 고등법원에서 압수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검찰관 또는 군사법원”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서류를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대조·확인한 후”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로, “수리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환가지휘서·견적서·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를 “수리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견적서·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으”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군검찰부등에”를 “군검찰부등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부등에 보존책임”을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

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7조 중 “압수표를”을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로 한다.

제8조 중 “사건”을 “사건 또는 기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특수압수물에 대해서”를 “특수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를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20조 중 “검찰관의 참여하”를 “군검사의 참여하”로, “검찰관의 봉인”을 “군검사의 봉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건종결 전에 검찰관으”를 “사건결정 또는 기록처리 전에 군검사”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3의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할 때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에는 이송·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

제26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의 성명”을 “군검사의 성명”으로, “검찰관의 수령확인”을 “군검사의 수령확인”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군사법원의 대출)”을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의 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찰서기가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의 서명”을 “군검사의 서명”으로 한다.

제37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찰관이 제1항”을 “군검사가 제1항”으로, “헌병부대”를 “수사부대”로, “검찰관이나”를 “군검사나”로 한다.

제48조제2항 단서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 또는 헌병부대”를 “군검사 또는 수사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가대금이나 제21조”를 “군검사가 환가대금이나 제21조제2항”으로, “정부보관금 전환절차를 거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작성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를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제55조제1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 또는”을 “군검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검찰관 또는”을 “군검사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검찰관 또는”을 “군검사 또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

제59조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압수표”를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압수표”로, “처분 결과란을 적고 검찰관”을 “처분결과란에 송부기관, 송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군검사”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송부”를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송부”로 한다.

제62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관으”를 “군검사”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64조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사건종결 전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를 “(사건결정 전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압수물의 사건종결 전”을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로, “장”을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압수물을 사건종결 전에”를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피가환부인”을 각각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 같은 항 중 “알리고,”를 “알리고, 가환부”로, “2통을 받아 1통은”을 “2부를 받아 1부는”으로, “1통은 사건기록”을 “1부는 사건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서로써”를 “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68조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9조 중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한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헌병부대등””을 ““수사부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통을”을 “2부를”로 한다.

제71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헌병부대등”을 “수사부대등”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헌병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을 “(수사부대등 보관 압수물의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관은 헌병부대등”을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으로, “헌병부대등에 보관위탁한”을 “수사부대등에 보관위탁한”으로, “헌병부대등의”를 “수사부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헌병부대등”을 각각 “수사부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검찰관은 헌병부대등”을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75조 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발급”을 “교부”로 한다.

제76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 또는”을 “군검사또는”으로, “검찰관의”를 “군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촉탁회답서에 따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검찰관은”을 “검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1조 중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관이”를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은”을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으로, “검찰관에게”를 “군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소법원에 대응하는”을 “상소심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급 부대 군검찰부”를 “군검찰부”로 한다.

②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고등검찰부장은 소속 검찰관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 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중 “각군의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각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제9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별표 1의 제목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제25조 관련)”을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제25조 및 제84조 관련)”으로 하고,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

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검찰부”를 “각각 “검찰단”으로 하고, “검찰부장”을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헌병대장”을 각각 “수사단(대)
장”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 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등록번호			
수신	검찰부장 (검사장)	발신 군검사	검찰부 (서명 또는 인)
제목 축탁결과 회답			
귀 검찰부(검찰청)에서 형제 호(압제 호)로 처분축탁한 에 대한 사건을 . . .자로 처분하였음을 회답합니다. 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5. -----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그 밖에 <u>검찰관 또는 군사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 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 수물로 인정하는 물건</u>	아. ----- <u>군검사 또는 군사 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 법원을 말한다)</u> ----- -----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3조(주의사항) ① (생 략)	제3조(주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u>검찰서기는 압수물 관계 서 류가 멸실 · 훼손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u>	② <u>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신속하 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서 류를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 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u>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u>검찰서 기는 <u>검찰관</u>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 물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 서등을 <u>대조 · 확인한 후</u> 그 압</u>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 ---- <u>군검사</u> ----- ----- ----- ---- <u>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u>

수물을 수리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환가지휘서·견적서·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생략)

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검찰부등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군검찰부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 (생략)

번호를 부여하여 -----
----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견적서·매수서 등 공매관계 서류를 추가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군검찰부등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
-----.

③ -----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

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건송치 전에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이 환부·가환부(假還付)·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되었을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압수물 중 일부만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② ----- 군검사-----

-----.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
-----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

-----.

제8조(압제번호) -----
----- 사건 또는 기록-----
-----.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① -----

-----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특수압수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수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당 사건기록과 압수표에 각 1부씩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특수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검찰관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검찰관으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을 하거나 피가환부인이 아닌 사람에

에 대해서-----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 ----

----- 군검사-----

-----.

② -----

----- 군검사-----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 군검사가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sists of ten identical row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압수물 보관자) ① (현행
과 같음)

② -----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 · 보관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여 ---.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

----- 군검사의 참여
하-----
군검사의 봉인-----
-----.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① 검찰서기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인 통화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에 압제번호·증제번호·성명·금액 등을 적은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예금·적금 통장, 전당표, 보관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검찰관으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① -----

----- 군검사-----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① -----

--- 군검사-----

----- 군검사-----

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을 의뢰하고 외국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

-----.

② -----

----- 군
검사-----
-----.

③ -----

----- 군검사

-----.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

----- 군검사-----

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한 후 압수표에 검찰관이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적어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5. (생략)

②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폐기 또는 환가 처분의 지휘를 받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① -----

----- 군검사가 -----

군검사에게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할 때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에는 이송·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

4. 5. (현행과 같음)

② ----- 사건결정 또는 기록처리 전에 군검사-----

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
의 요지를 적은 후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
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압수표
를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제26조(대출) ① 검찰관이 압수물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
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
다.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압수물 대출부에 검찰관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
을 적고, 수령인란에 검찰관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검찰관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대
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
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 연월
일을 적고, 반환 수령인란에 서
명 또는 날인한 후 압수물건 대
출표를 검찰관에게 돌려주어야

----- 군검사에게
-----.

③ 군검사는 -----

-----.

제26조(대출) ① 군검사가 -----

--.

② -----
----- 군검사의
성명-----
----- 군검사의
수령확인-----
군검사에게 -----.

③ -----

----- 군검사-----

한다.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 검찰관이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검찰관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하여야 한다.

제28조(군사법원의 대출) (생략)

<신설>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유가물(有價物)일 때에는 공매를 통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경우에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 군검사가 -----

-----.
② -----

----- 군검사 -----

-----.

제28조(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의 대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검찰서기가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군검사는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 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생략)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이거나 몰수한 유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괴 또는 폐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

-----.

② ----- 군검사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군검사-----.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① 군검사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군검사-----

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
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보관금수입 영수증
을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
원은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검찰서
기에 주고, 검찰서기는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압수

-----.

----- 군검사-----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군검사는 -----

-----.

② ----- 군검사-----

----- 군검사
의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① 검찰
관은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
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
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
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
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
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
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
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
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
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
야 한다.

----- 군검사-----
-----.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① 군검
사는 -----
-----.

② ----- 군검사-----

---- 군검사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군검사-----.

제34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①
군검사는 -----

-----.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 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 회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5조(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검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

② ----- 군검사-----

----- 군검사의

-----.

③ -----

----- 군검사-----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 군검사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검사는 -----

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검찰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검찰부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6조(몰수물의 인계처분) ① (생략)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검찰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⑤ 군검사는 -----

-----.

제36조(몰수물의 인계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검사-----

----- 군검사의 서명 -----

-----.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사는 -----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① 검찰관은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① 검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몰수금품 통보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국가정보

-----.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① 군검사는 -----

-----.
----- 군검사는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① 군검사는 -----

-----.

② 군검사는 -----

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생략)

제40조(몰수물의 처분 촉탁)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몰수의 집행)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몰수물의 처분 촉탁) ① 군검사는 -----

----- 군검사
에게 -----
-----.

② 군검사가 -----

-----.

제41조(몰수의 집행) ① 군검사는 -----

-----.

② 군검사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몰수의 집행 촉탁)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몰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4조(위조·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① 검찰관은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변조 표시를 하고 판결 연월일, 판결 법원, 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덧붙여 적고, 소속 군검찰부명과 몰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① 검찰관은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42조(몰수의 집행 촉탁) ① 군검사는 -----

----- 군검사

에게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위조·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① 군검사는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① 군검사는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 처분 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의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몰수물의 교부) ① (생략)

② 「군사법원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취득

-----.

② ----- 군검사가 -----

군검사에게 -----.

③ 군검사-----

-----.

④ -----

----- 군검사-----
-----.

제46조(몰수물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대가를 내주는 경우에 검찰
서기는 교부청구서에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
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
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내
줄 때에도 같다.

제47조(소유권 포기) ①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
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
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명확히 나타
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
서로 본다.

③ 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소유
권 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소
유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
를 관할하는 헌병부대의 장, 군

----- 군검사-----

-----.

-----.

제47조(소유권 포기) ① 군검사는

-----.

1. ~ 4. (현행과 같음)

② 군검사는 -----

-----.

-----.

③ 군검사가 제1항-----

----- 수사부대-----

검찰부의 검찰관이나 경찰서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검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제49조(환부절차)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 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 군검사나 -----

-----.

-----.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군검사는 -----

-----.

제49조(환부절차) ① -----
군검사-----

-----.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나 전자적 인증의 방
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피
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
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압수
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피환부인의 소재
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을 때에
는 검찰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① 검찰
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환가대
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환부인을 출석
시켜 별지 제38호서식의 보관금
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
의 확인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

-----.

② -----

----- 군검사-----
-----.

③ -----

----- 군검사-----
-----.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① ----
---- 군검사-----

----- 군검사의

다.

② (생략)

③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환부의 촉탁) ① 검찰관은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헌병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환부인이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환가대금이나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전환절차를 거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작성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군검사-----
-----.

제54조(환부의 촉탁) ① 군검사는 ----- 군검사 또는 수사부대-----

----. -----

-----.

② 군검사가 환가대금이나 제21조제2항-----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다. <후단 신설>

제55조(환부 공고) ① 검찰서기는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검찰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압수물 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압수물 공고목록표 중 1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검찰서기에 주어 보관하게 하고, 「관보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에 나머지 압수물 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7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① 검찰관은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제55조(환부 공고) ① -----

----- 군검사-----

----- 군검사에게-----
-----.

② 군검사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① 군검사는 -----

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재정신청(裁定申請)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
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재
정신청, 「군사법원법」 제465
조에 따른 준항고 또는 같은 법
제530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 대
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8조(다른 군검찰부로의 이송)

① 검찰관은 사건을 다른 군검
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압수물이 있는 사
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

② -----

----- 군검사-----

-----.

제58조(다른 군검찰부로의 이송)

① 군검사는 -----
----- 군검사 또는 -----

-----.

② 군검사는 -----
----- 군검사
또는 -----

-----.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검찰관 이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9조(압수물의 송부)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③ -----
----- 군검사
가 ----- 군검사
또는 -----

----- 군검사에게 -----
-----.

④ -----
군검사는 -----

--.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

제59조(압수물의 송부) -----
-- 군검사-----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부에 그 내용을 적고, 압수물을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
으로 보낸 후 압수표의 처분 결
과란을 적고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환가대금의 송부) ① 검찰
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환가대
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과장
(소속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검
찰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게 보내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
한다.

② (생략)

③ 검찰서기는 보관금 전환통지
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표
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검찰관
의 확인을 받아 사건기록과 함
께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송부하
여야 한다.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 군검사의 -----
-----.

제60조(환가대금의 송부) ① ----
---- 군검사-----

----- 군
검사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부보관금전환
통지서를 압수표-----
-- 처분결과란에 송부기관, 송
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
하여 군검사-----
--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송
부-----.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① 검찰관
은 기소중지 처분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
물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
증서와 유가증권 등 중요한 압
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
인장(印章) 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관
은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군사법원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
은 법 제174조 및 제175조에 따
라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압
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
건기록에 편철하게 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송부 등) -----

----- 군검사-----

-----.

제63조(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① 군검
사는 -----

-----.
-----.

② ----- 군검사
는 -----

-----.
-----.

③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 연월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⑤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관은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64조(준수사항) 검찰관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③ ----- 군검사-----

-- 군검사의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군검사

에게 ----- 군검사는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준수사항) 군검사는 ----

-----.

제65조(사건종결 전 환부·가환부
· 피해자환부) ① 압수물의 사
건종결 전 환부·가환부 또는
피해자환부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사건종
결 전에 가환부할 때에는 피가
환부인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46
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를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피
가환부인에게 선량한 관리자
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알리
고, 압수물 수령증 2통을 받아 1
통은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
고 나머지 1통은 사건기록에 편
철한다.

④ 검찰서기는 가환부한 압수물
을 본환부(本還付)할 때에는 별
지 제47호서식의 본환부 통지서
로써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
철된 가환부압수물 수령증에 본
환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환가처분) 검찰관은 다음

제65조(사건결정 전 환부·가환부
· 피해자환부) ①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 조
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

② ----- 사건결정 전에 압
수물을 ----- 가환부
를 받을 사람-----
-----.

③ ----- 가
환부를 받을 사람----- 알리
고, 가환부 ----- 2부를 받아 1
부는 -----
----- 1부는 사건기록-----
-----.

④ -----

----- 통지서
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

-----.

제66조(환가처분) 군검사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수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1. 2. (생략)

제67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제171조제2항에 따른 검찰관의 압수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이 절에서 정한 환부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고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1. 2. (현행과 같음)

제67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 --

군검사-----

-----.
-----.

② 군검사는 -----

-----.

제68조(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 군검사-----
-----.

-----.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 처분 지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찰관에게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 또는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검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제70조(압수물 보관송치사건)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군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부대 등(이하 “헌병부대등”이라 한다)에 압수물을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제2장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에 보관송치사건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생략)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 처분 지휘) -----
----- 군검사에게 -----

-----.

제70조(압수물 보관송치사건) ① -----

----- “수사부대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성명·주소와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면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통을 받을 수 있다.

④ (생략)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이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헌병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제72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의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 2
부를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
----- 군검사가 -----
----- 수사부대등-----

-----.

제72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 -

----- 군검사-----
-----.
-----.

② 군검사는 -----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
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적
어야 한다. 보관료가 변경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검찰서기는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관위탁 압
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보
관 상황을 확인하여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제70
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군검찰
부 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
에 관하여 보관 상황을 확인하
게 할 수 있다.

제74조(헌병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① 검찰관은 헌병부대등
에 보관 중인 압수물 또는 헌병
부대등에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제29호서식의 압
수물 처분 촉탁서에 따라 헌병
부대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

-----.
-----.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

----- 군검사-----
-----.

② 군검사는 -----

-----.

제74조(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
----- 수사
부대등에 보관위탁한 -----

----- 수사
부대등의 -----

탁하여야 한다.

② 헌병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 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검찰서기는 헌병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을 때에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은 헌병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압수물 제출을 명하는 뜻을 적고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생략)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

-----.

② 수사부대등-----

-----.

③ ----- 수사부대등-----

-----.

④ ----- 군검사
는 수사부대등-----

-----.

----- 군
검사-----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

-----.

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검
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6조(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
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
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
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
속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
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
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
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
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
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회답서에 따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
실을 적어야 한다.

----- 군
검사-----
----- 교부-----.

제76조(촉탁수리) ① -----
----- 군검사또는 --

-- 군검사의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
탁결과를 -----
-----.

제77조(환부수탁) ①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검찰청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제79조(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① ~ ③ (생략)

④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검찰관은 지체 없이 압수물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

제77조(환부수탁) ① -----

--- 군검사 -----

-----.

② -----

--- 군검사 -----

---.

제79조(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검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군검사는 -----

-----.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제81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0조에 따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관의 압수물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은 제80조에 따라 송부받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소속 군검찰부에서 처분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으며,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반환서로 처분을 지시하거나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②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을 준용한다.

----- 군검
사 -----

-----, -----
-----.

제81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 상소심
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가 -----

-----.

제82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

----- 군검사에게 -----

-----.

② 상소심을 수행하는 -----

-----.

제84조(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일시를 적은 후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을 검찰관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④ (생략)

⑤ 각급 부대 군검찰부의 장은 검찰서기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 압수표, 압수물 대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①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고등검찰부장은 소속 검찰관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①

----- 군
검사-----

-----.

②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군검찰부-----

-----.

제86조(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국

방부 검찰단장과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고등검찰부장은 소속 검찰관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군의 고등검찰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결과를 각군본부의 법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군의 고등검찰부장은 관할 보통검찰부가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 수의 과소(過少) 등의 사유로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군의 고등검찰부장은 국방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0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
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
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
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7조(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 각군 검
찰단장-----

각군 검찰단장

제90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

---.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 인
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u>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 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 한다.</u>
--	---